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13 발의연월일: 2024. 8. 2.

발 의 자:고동진·권영세·안상훈

박충권 · 강승규 · 박준태

성일종 · 서일준 · 박덕흠

김성원 · 안철수 · 최수진

주호영 · 조배숙 · 권성동

송언석 · 이달희 · 최은석

박성훈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가 97억 달러(11.1조원, '21)에 달하는 상황이며,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 2건 중 1건은 전자제품인 것으로 조사됨.

특히,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위조상품 유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이 41만점이 넘는 것으로나타났으며, 이 중 대다수의 위조상품은 네이버, 쿠팡, 알리, 테무, 11

번가,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등 국내 거대 온라인플랫폼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내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 제조업 일자리, 정 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거대 온라인 플랫폼사는 위조상품 판매근절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플랫폼사의 위조상품 판매책임을 명시하여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책임을 부과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국내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제16조의2 및 제20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같다"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등)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영업장을 말한다)에서의 부정경쟁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다음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
 - 2. 부정경쟁행위가 의심되는 통신판매 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 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의 상품판매 및 계정사용의 일시적인 정 지

- ②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해당 상품판매의 중단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계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 통신판매중 개의뢰자의 상품판매 중단 및 계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 행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특허청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에서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판매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상거래에서 부정경쟁행위의 예방 및 근절 조치를 하지 아니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통 신판매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 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특허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 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 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이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같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T}-----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등) ① 「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 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 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 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 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 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의 부 정경쟁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 1.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
- 2. 부정경쟁행위가 의심되는 통 신판매 중개를 의뢰한 자(이 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의 상품판매 및 계정사 용의 일시적인 정지
- ②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알 려야 한다.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해당 상품판매의 중단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계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수 있다.
- ④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 통 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품판매 중단 및 계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행 내용을 보고

제20조(과태료) ①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에서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지아니하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및 판매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상거래에서 부정경쟁행위
의 예방 및 근절 조치를 하지
아니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_